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원예시설 연구 효율화를 위해 인력 5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이체하고, 식품 개발의 연구 강화를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하부조직인 농식품자원부를 국립식량과학원으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식품자원개발부로 변경하고, 국립식량과학원 하부조직인 중부작물부 및 남부작물부를 기초식량작물부 및 밭작물개발부로 개편하며,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소득식량작물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농촌진흥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관리, 한식세계화, 전통식품 산업화”를 “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화”를 “농촌관광, 치유농업 등 산업화”로 하며, 같은 조 제23호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농업환경부·농업생물부·농산물안전성부·농업공학부·농업생명자원부 및 농식품자원부”를 “농업환경부·농업생물부·농산물안전성부·농업공학부 및 농업생명자원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업·농촌”을 “농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유용 미생물의 기능성 유전자 개발 이용 및 고부가가치 소재 창출

11. 미생물 등 대사산물(물질대사 중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및 실용화 연구

제20조제2항제5호 중 “예방 및 농작업 안전”을 “예방”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제28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조)의 제목 “(농식품자원부)”를 “(식품자원개발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농식품자원부”

를 “식품자원개발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통식품”을 “한식 및 전통식품”으로, “연구개발”을 “연구”로 한다.

1. 식량작물의 수확 후 이용 및 소비 확대에 관한 연구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을 “환경, 식품자원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식량·식품자원의 개발, 이용증진 및 소비확대에 관한 연구

제26조 중 “중부작물부 및 남부작물부”를 “기초식량작물부, 밭작물개발부 및 식품자원개발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부작물부)”를 “(기초식량작물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부작물부”를 “기초식량작물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작물의 유전·육종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6. 벼·맥류·사료작물·꽃거름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개발

7. 작물 생산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8. 간척지에서의 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등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

제28조의 제목 “(남부작물부)”를 “(밭작물개발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남부작물부”를 “밭작물개발부”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소득식량작물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바이오에너지작물 및”을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밋”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바이오에너지작물 연구소”를 각각 “소득식량작물연구소”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직무)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업과학원”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농촌자원, 생물자원, 농산물안전성, 농업용 에너지 및 생산자동화, 농업관련 유용유전자개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농업유전자원 이용관리, 한식세계화, 전통식품 산업화 등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원잠종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직무) ----- ----- ----- ----- ----- 이 <u>용관리</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촌 환경자원의 보전·관리 및 <u>산업화</u> 이용 연구	4. ----- -- <u>농촌관광, 치유농업 등 산 업화</u> -----
5. ~ 22. (생략)	5. ~ 22. (현행과 같음)
<u>23. 한식세계화 및 전통식품 산 업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u>	<삭 제>
제16조(하부조직) 농업과학원에 <u>농업환경부·농업생물부·농산 물안전성부·농업공학부·농업 생명자원부 및 농식품자원부</u> 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6조(하부조직) ----- <u>농업환경부·농업생물부·농산 물안전성부·농업공학부 및 농 업생명자원부</u> ----- ----- -----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과 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업환경부) ① (생 략)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환경자원 발굴·보전 및 개발에 관한 연구

2. 농촌 환경자원의 산업적 이용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3.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평가에 관한 연구

4. ~ 14. (생 략)

제18조(농업생물부) ① (생 략)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신 설>

-----.

제17조(농업환경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삭 제>

<삭 제>

3. 농업-----

4. ~ 14. (현행과 같음)

제18조(농업생물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유용 미생물의 기능성 유전자 개발 이용 및 고부가가치

<u><신 설></u> 제20조(농업공학부) ① (생 략)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농업재해 <u>예방 및 농작업 안전 기술 개발</u> 6. (생 략) 제21조(농업생명자원부) ① (생 략)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u>유용 미생물의 기능성 유전자 개발 이용 및 고부가가치 소재 창출</u> 6. <u>미생물 대사산물(물질대사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및 실용화 연구</u> 7. · 8. (생 략) 제22조(농식품자원부) ① <u>농식품 자원부에</u> 부장 1명을 두되, 부	<u>소재 창출</u> 11. <u>미생물 등 대사산물(물질대사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및 실용화 연구</u> 제20조(농업공학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예방</u> ----- ----- 6. (현행과 같음) 제21조(농업생명자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7. · 8.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식품자원개발부) ① <u>식품자원개발부</u>-----
--	---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식 세계화 기반 기술에 관한 연구

2. 전통식품 산업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 9. (생략)

제24조(직무)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과학원”이라 한다)은 식량작물·사료작물·꽃거름작물·바이오에너지작물 등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 환경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5. (생략)

6. 식량자원의 개발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7. ~ 13. (생략)

제26조(하부조직) 식량과학원에 중부작물부 및 남부작물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

② -----
--.

1. 식량작물의 수확 후 이용 및 소비 확대에 관한 연구

2. 한식 및 전통식품 -----
-- 연구

3. ~ 9. (현행과 같음)

제24조(직무) -----

----- 환경, 식품자원 개발 -----

-----.

1. ~ 5. (현행과 같음)

6. 식량·식품자원의 개발, 이용 증진 및 소비확대에 관한 연구

7. ~ 13. (현행과 같음)

제26조(하부조직) -----
기초식량작물부, 밭작물개발부
및 식품자원개발부-----

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량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중부작물부) ① 중부작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식량작물의 수확 후 이용 및 소비 확대에 관한 연구

<신 설>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제27조(기초식량작물부) ① 기초식량작물부-----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작물의 유전·육종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벼·맥류·사료작물·팥거름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 개발

7. 작물 생산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8. 간척지에서의 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등 간척지 이용에 관

제28조(남부작물부) ① 남부작물 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 로 보한다. ② (생 략) 제30조(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①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 량,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 학원장 소속하에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를 둔다. ②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 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u>한 연구</u> 제28조(밭작물개발부) ① 밭작물 개발부----- -----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① - -----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 ----- ----- 소득식량작물 연구소-----. ② 소득식량작물연구소-----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38</u>	<u>340</u>	+2
.	.	.	
.	.	.	
일반직 계	<u>337</u>	<u>339</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6</u>	<u>328</u>	+2
.	.	.	

[별표 2]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892</u>	<u>889</u>	-3
일반직 계	<u>892</u>	<u>889</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74</u>	<u>871</u>	-3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4